근로계약서

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(이하 "회사")와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/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조 근로계약기간, 업무 내용 및 근무장소

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단시간 근로자(아르바이트)로 근무한다. 직원의 근무장소는 인천4센터 로 하며, 담당업무는 입출고 및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로 한다. 또한, 직원의 업무 및 근무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.

제2조 근무시간

- ① 근 로 일 : 상기 계약기간 중 근무하기로 정한 날
- ② 근로시간 : [09:00]부터 [18:00]까지(1일 8시간)
- ③ 휴게시간: [12:00]부터 [13:00]까지(1일 1시간)
-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정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.

제3조 급여

① 시급은 [79,065]원으로 하며, 근로시간 및 일수에 따라 정산 후 급여를 지급한다. 상기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 [79,065]원을 1일 급여로 계산한다.

- 급여의 구성

구분	금액 (원)	비고
기본급	60,240	8 시간
야간근로수당	18,825	5 시간
합계	79,065	

- ② 급여는 근무종료일 기준 차주 수요일이 되는 시점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위 급여일은 향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③ 직원은 퇴사시 ID카드, 피복 등 회사물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며, 미 반납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.
- ④ 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따른다.

제4조 휴일

- ①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- 1. 주휴일 : 해당주(일~토)의 5일을 개근할 경우에 한하여 유급부여
- 2. 근로자의 날(단, 해당일을 전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)
- 3.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
-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전항의 휴일은 변경될 수 있고,

대체휴일(휴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)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본인은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.

제5조 휴가

- ① 회사는 직원이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(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)를 부여한다.
- ② 그 외 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.

제6조 계약해지
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때
- 3. 기타 사회상규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

제7조 기타사항

-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제규정에 따른다.
- ②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시 징계 및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진다.

- 근로계약기간

: 2018 년 05월 05일부터 2018 년 05월 06일까지

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

첨부의 서류를 모두 읽었으며,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.

※ 첨부

1. 근무수칙

동의

2. 서약서

- 동의
- 3. 금품청산연장동의서[주휴수당]
- 동의
- 4. 소지품 등 검사에 관한 동의서 5. 안전사항 준수에 관한 동의서
- 동의 ✔ 동의

[회사]

[직원]

생년월일: 2010-05-06

대퓨이사

NORTMAN JOSEPH NATHAN

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



pdAppearanceDictionary. System oft. Finting Ima